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7가단5094160 판결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백창수

피고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정용진

변론 종결2019. 5. 9.

판결 선고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9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9.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B으로부터 피고가 2012. 9. 7. 발행한 액면금 12,1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C)와 2012. 9. 19. 발행한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8매(수표번호 D, E, F, G, H, I, J, K) 합계 92,100,000원의 자기앞수표 9매(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B이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 2014. 8. 13. 피고에게 분실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한 다음, 2014. 8. 20. 이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4. 8. 25. 공시최고를 한 후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14. 12. 8.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자 같은 날 이 사건 각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하였다.

다. B은 위 제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5. 1. 9. 위 제권판결을 피고에게 제시하여 수표금 9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B의 공시최고신청 직후인 2014. 8. 22. 이 사건 각 수표 중 2012. 9. 19.자 수표 8매(수표번호 D-K)를 L은행 일원역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위 사고신고로 인하여 지급 거절되었고, B이 수표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5. 5. 4. 이 사건 각 수표 중 2012. 9. 7.자 수표(수표번호 C)를 M은행 경산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역시 위 사고신고로 인하여 지급 거절되었다.

라. 원고가 2017. 8. 7. B을 상대로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지 못하여 상환청구권을 상실하였고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 상당액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이득상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표채무자의 이득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득이라 함은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897 판결 참조), 피고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대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 중 8매를 L은행 일원역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분실신고자인 B와 수표 원본의 지급제시자인 원고를 상대로 모순되는 경위의 진상을 파악하였어야 하고, 설사 그 후에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그 제권판결 제시자로부터 수표금 지급 청구를 받더라도 혹시 그 제권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 제권판결을 받은 기초가 되는 사고신고가 혹시 허위는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수표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당초의 지급제시자인 원고와 B를 동시에 불러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파악해서 수표금을 잘못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제권판결이 나도록 방치하고 나아가 잘못된 제권판결에 기한 B의 수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지 않고 수표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012. 9. 19.자 수표 8매의 액면금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당시 시행중이던 피고 예금규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사고신고 있는 자기앞수표의 지급요청이 있는 때에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권판결문 정본을 받고 지급하되, 다만 사고수표의 실질적 권리를 다투고 있을 때에는 지급을 보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고수표의

실질적 권리를 다투고 있을 때'에 해당하려면, 지급제시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공시최고절차에서 그 지급제시한 사람 등으로부터 권리 신고가 있어 신고된 권리를 보류하고 사고수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문이 제출되거나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등과 같이 실제로 권리를 다투다고 볼만한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부가적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아닌 타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피고에게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임을 알리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만 엿보인다(미 조치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수표금 지급에 예금규정 제34조 제2항 제4호 단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B에 대한 수표금 지급을 보류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수표금 지급에 있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홍도